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. 4. 13 선고 2022가단26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3. 12. 19 선고 2023나208866 판결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. 4. 13 선고 2022가단261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
담당변호사 유승호, 김선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

담당변호사 심규명

변론종결 2023. 3. 9.

판결선고 2023. 4. 13.

주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9. 8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3,008,1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53,008,1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535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8. 20. 변론을 종결한 후 2020. 10. 22. ‘C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0. 11. 10.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C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다가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4. 4. 25. 접수 제6846호로 2014. 4. 22.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, 이어서 같은 등기소 2020. 9. 10. 접수 제12206호로 2020. 9. 8.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C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다. 한편 C는 2015. 6. 1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, 채권최고액 19,500,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는데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가 2020. 10. 12. 피담보채무원리금 합계액인 15,067,868원을

대위변제함으로써 같은 달 14. 말소되었다.

라.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【인정근거】갑 제1호증의 1 내지 3, 갑 제2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이미 C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,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,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위 D의 소유였다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이 더 좋은 C 앞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신탁하여 놓았던 것에 불과하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C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고,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C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툼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C가 아버지인 D로부터 2014. 4. 22.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, 한편 D가 2020. 10. 12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15. 6. 26. 및 같은 달 28.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대출금 상당 합계 1,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, 이는 C가 위 대출금을 D에게

대여하였다가 이후 D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C가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D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위 확정판결 선고 직전에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경위나 이유 등을 선뜻 수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D가 2014. 4. 2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D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) 소결론

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2020. 9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기 등에 비추어, C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장차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,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

1)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6711 판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2호증의 기재, 감정인 F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. 10. 14. 말소된 사실, 2022. 12. 9.

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8,076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서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추정되는 위 68,076,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인 위 15,067,868원을 공제한 잔액은 53,008,132원이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53,008,1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3,008,132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동호

별지